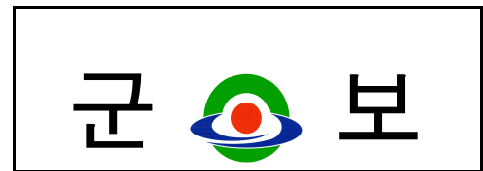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19호 2020. 3. 2.(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장산1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0-19호)

공 고

-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340호)
-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341호)
-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345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고 시

예천군 고시 제 2020 - 19호

장산1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

장산1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3. 02.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장산1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감천면 장산1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및 효과
 - 장산1리 마을만들기를 시행하여 노후된 복지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마을이미지 향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4.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77, 지방비 423)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어울림 홈 조성, 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
7.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0년(2년간)
8. 기본계획의 세부내용 : 붙임 기본계획서와 같음(기본계획서 게재 생략)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영세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40조)

○ 신청요건(모두충족)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포함)

－ 소유재산(부동산·회원권·승용차)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포함)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신청불가
- 법인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신청불가

나. 선정대리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통지 의무 신설(안 제41조)

○ 신청서 제출(군) → 요건충족여부(군) → 대리인 선정(도) → 신청결과통지(군)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방안 신설(안 42조)

- 임기만료 전 지정사건 지속 수행
- 납세자 정보 관련 비밀유지
- 우수 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각종 위원회 위촉시 우대 가능
-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가능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2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046 팩스 054-650-6059
- 전자우편 : addadd@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 치 법 규 명 :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제10장(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1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

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종전의 제4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보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10장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u> <u>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u> <u>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u> <u>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u> <u>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u> <u>및 제4조에 따른다.</u> <u>제41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u> <u>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u> <u>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u> <u>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u> <u>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1천</u> <u>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u> <u>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u> <u>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u> <u>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u> <u>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u> <u>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u> <u>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u> <u>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u> <u>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u> <u>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u> <u>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u> <u>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u>

<신 설>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 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
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
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
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
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에게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에 상
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 (생 략)

제11장 보칙

제43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0.3.2.][법률 제16854호, 2019.12.31., 일부개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3.2.][대통령령 제30317호, 2019.12.31., 일부개정]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정대리인 신청 시 서식 명시
 - 예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안 제24조)
 -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안 제25조)
 -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안 제26조)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2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046 팩스 054-650-6059
- 전자우편 : addadd@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 치 법 규 명 :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41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제25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조례 제41조제6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41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 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7호서식 과 같다.
<신 설>	제25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 정대리인”이라 한다)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6조(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 세)조례 제41조제6항에 따른 선 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 록·관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예천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0 -				

예 천 군

예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예천군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예천군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예천군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예천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관인생략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illegible]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인력기준 적합여부 심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적합여부 심사 등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내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 5급이상 공무원 1명
- 위촉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예천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

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심사 가능

○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별표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3. 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3.23.(월)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제출처(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 전화 : 054-650-6168 팩스 : 054-650-6360
- 전자우편 : ssinhy@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예천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예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예천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심사 안건이 부결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table><tr><th>구분</th><th>기준</th><th>감점</th></tr><tr><td rowspan="4">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td><td>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td><td>20</td></tr><tr><td>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인 경우</td><td>15</td></tr><tr><td>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td><td>10</td></tr><tr><td>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td><td>5</td></tr><tr><td rowspan="2">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종사자 인당 감점</td><td>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td><td>5</td></tr><tr><td>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td><td>10</td></tr></table>	구분	기준	감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20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인 경우	15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10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종사자 인당 감점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5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10	20
	구분	기준	감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20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인 경우	15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10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종사자 인당 감점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5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10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 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예시 :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table><tr><th>기준</th><th>감점</th></tr><tr><td>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 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td><td>20</td></tr><tr><td>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 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td><td>15</td></tr><tr><td>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 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td><td>10</td></tr></table>	기준	감점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 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20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 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5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 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0	20										
기준	감점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 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20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 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5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 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0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 기준>		5																
	<table><tr><th>기준</th><th>득점</th></tr><tr><td>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td><td>5</td></tr><tr><td>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 5년 이상</td><td>3</td></tr><tr><td>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 1년 이상 ~ 5년 미만</td><td>1</td></tr><tr><td>복지관련 경험 없음</td><td>0</td></tr></table>			기준	득점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	5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 5년 이상	3	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 1년 이상 ~ 5년 미만	1	복지관련 경험 없음	0						
기준	득점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	5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 5년 이상	3																		
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 1년 이상 ~ 5년 미만	1																		
복지관련 경험 없음	0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최종) 이력 <평가 기준>		5																
	<table><tr><th>기준</th><th>득점</th><th>기준</th><th>득점</th></tr><tr><td>A(최우수)</td><td>5</td><td>D(보통)</td><td>2</td></tr><tr><td>B(우수)</td><td>4</td><td>E(미흡)</td><td>1</td></tr><tr><td>C(양호)</td><td>3</td><td>평가거부</td><td>0</td></tr></table>			기준	득점	기준	득점	A(최우수)	5	D(보통)	2	B(우수)	4	E(미흡)	1	C(양호)	3	평가거부	0
	기준	득점		기준	득점														
	A(최우수)	5		D(보통)	2														
B(우수)	4	E(미흡)		1															
C(양호)	3	평가거부	0																
※ 평가이력이 없는 경우와 신규설치의 경우 3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 1회 이상)		5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 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5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5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3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여부		2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및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2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ex. 공개모집 여부 등)	2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2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 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3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2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